

사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법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병원장

참 조

제 목 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」 안내 및 희망병원 조사

- 1. 관련 근거 : 가. 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 제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666호, 2019.11.21.) 나.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-5400(2019.11.22.)
- 2.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^{*}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(의료적성검사)의 항목, 방법, 절차 등을 규정한 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」을 안내합니다.
 - * 자격유지검사: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유지 판단 여부를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.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(현재 82,000여명 추계)
- 3. 동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 판단 여부를 **적정한 검사 장비^{*}를 갖춘 '의원, 병원 및 종합병원'에서는 의료적성검사를**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* 의료적성검사 기관 장비기준(별표 5) : 신장계, 체중계, 혈압계, 공인 혈당계, 공인시력표(차안계 포함), 자동시야계, 악력계 각 1대 이상
- 4. 아울러, 도로교통공단 요청에 따라 <u>동 의료적성검사를 희망하는 의료</u> <u>기관은 아래 표에 기재하시어 '19.11.29.(금)까지 본회 기획정책국(Fax.</u> 02-705-9219, E-mail. hkj@kha.or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도	병원명	주소(정확히 기재)	전화번호(대표번호)

※	담당자(부서,	성명,	전화번호) :	
----------	---------	-----	---------	--

붙임.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에 대한 관리규정 제정(안) 전문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- 협회업무 -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화장을

사원 허경재 팀장 최명희 국장 방성민 본부장 김종윤 사무총장 김승열 시행: 기획정책국 제2019-543(2019.11.26.)

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www.kha.or.kr 전화 02-705-9216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hkj@kha.or.kr